|  |  |
| --- | --- |
|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080200009** |
| **최초 등록일** | **2008.07.15** | **최종 등록일** | **2016.04.22** |

**베스트올 정보공개서**

**[㈜현대씨에스엔]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현대씨에스엔**

|  |  |  |  |
| --- | --- | --- | --- |
| **대표번호** | **070-4287-7001** | **팩스번호** | **031-797-0204** |
| **가맹사업운영부서** | **가맹사업부** | **가맹부서전화번호** | **070-4287-7001** |
|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로 111-15, 502호****(덕풍동, 리치플러스 하남센터)** |
| **홈페이지** | [**www.bestallcvs.com**](http://www.bestallcvs.com) |

**Ⅰ. 가맹본부의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

1. 가맹본부의 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3. 인수∙합병 여부
4.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5. 가맹본부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2. 가맹사업의 연혁
3.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4.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수 변동 현황
5. 기타 가맹사업현황
6.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과 산정기준
7. 가맹지역본부(지사를 포함한다) 현황
8. 바로 전 사업연도의 광고∙판촉 지출 내역
9. 가맹금 예치기관
10.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내역

**Ⅲ.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3. 형(刑)의 선고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2. 영업 중의 부담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임차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4. 영업지역
5. 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7.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8.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9.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10.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Ⅵ.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2. 분쟁 해결 절차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 경영활동 자문
4. 신용제공 등 내역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ㆍ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http://franchise.ftc.go.kr>) – ‘민원참여’ – ‘교육자료’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정 보 공 개 사 항**

|  |
| --- |
| **Ⅰ. 당사의 일반현황**  |

※ 본 정보공개서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 가맹사업[(주)현대씨에스엔의 “베스트올”]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자

•귀하 : 당사와 베스트올 가맹계약 체결을 위하여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은 가맹희망자

1. **가맹본부의 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당사의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설립일** | **2010년 08월 26일** |
| **법인설립등기일** | 2010년 08월 26일 | **사업자등록일** | 2010년 10월 01일 |
| **법인등록번호** | 134211-0113920 | **사업자등록번호**  | 126-86-34150 |

1.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 --- | --- |
| **구분** |  **상호/이름**  | **대표자** | **대표번호** |
| **가맹본부** | (주)현대씨에스엔 | 이철중 | 070-4287-7001 |
| **특수관계인****(임원)** | 이철중(대표이사)임현철(이사)이대중(감사) | **영업표지** | **주소** |
| 베스트올(1개)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로 111-15, 502호(덕풍동, 리치플러스 하남센터) |

1. **인수∙합병 여부**

당사는 정보공개서 바로 전 3개년간 다른 기업과 인수 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사실은 없습니다.

1.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귀하가 향후 영위할 베스트올의 명칭∙상호∙서비스표∙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 --- | --- |
| **브랜드 명** | **상호** | **서비스표 관련정보** | **BI** |
| 베스트올 | 베스트올00점 (해당 지역명 표기) | 해당사항 없음 | BEST |

1. **가맹본부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2.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1 및 별첨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천원/VAT미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연도** | **총자산** | **총부채** | **총자본**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 2013년 | 4,141,538 | 2,286,518 | 1,855,019 | 34,660,417 | -463,511 | 457,517 |
| 2014년 | 4,220,426 | 2,377,798 | 1,842,628 | 30,793,762 | -1,028,101 | -12,391 |
| 2015년 | 2,190,891 | 575,699 | 1,615,192 | 11,292,819 | -895,640 | -227,436 |

1.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당사가 베스트올 가맹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지 않아 가.의 매출액 상황과 같습니다.
2.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 --- | --- |
| **관련여부** | **성명** | **직위** | **개인별 사업경력** |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담당 업무** |
| 가맹사업 관련임원 | 이철중 | 대표이사 | 2005.01~2010.10 | ㈜현대지엘에스 | 대표 |
| 대표이사 | 2011.12~현재 | ㈜현대씨에스엔 | 대표 |
| 임현철 | 이사 | 2011.12~현재 | ㈜현대씨에스엔 | 이사 |
| 이대중 | 감사 | 2010.10~현재 | ㈜현대씨에스엔 | 감사 |

\*현 대표이사 이철중은 피인수 기업인 ㈜현대지엘에스 대표이사로서 2005년 1월1일부터 인수시점인 2010년 10월1일까지 사업을 했고 2011년 12월22일자로 다시 ㈜현대씨에스엔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2010년 10월1일부터 2011년 12월 21일까지 김진오가 잠시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1.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 |
| **시점** | **임원수(명)** | **직원수(명)** |
| **상근** | **비상근** |
| 2015년 12월 31일 | 1 | 2 | 4 |

1.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베스트올 가맹사업 외의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사실은 없습니다.

1.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귀하가 당사의 베스트올 가맹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에게 부여할 수 있는 상표ㆍ실용신안ㆍ특허 등의 출원된 지식재산권이 없습니다.

|  |
| --- |
| **Ⅱ. 당사의 가맹사업 현황** |

1. **가맹사업 시작일**

베스트올의 가맹사업 시작일은 **2004년 03월 07일** 입니다.

\*당사의 베스트올 가맹사업은 ㈜현대지엘에스가 2004년 12월에 현대유통을 양수하였고 2010년 10월 1일에 다시 ㈜현대씨에스엔이 베스트올 가맹사업을 양수하여 가맹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 **베스트올의 연혁**

베스트올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 | --- | --- | --- |
| **상호** | **영업표지** | **대표자** | **가맹사업 경영기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현대지엘스 | 베스트올 | 이철중 | 2004.03∼2010.09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궁평리 58 |
| ㈜현대씨에스엔 | 베스트올 | 김진오 | 2010.10∼2011.12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 76-67 |
| 이철중 | 2011.12 ~ 2015.05 |
| ㈜현대씨에스엔 | 베스트올 | 이철중 | 2015.06 ~ 현재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로 111-15, 502호(덕풍동, 리치플러스 하남센터) |

\*현 대표이사 이철중은 피인수 기업인 ㈜현대지엘에스 대표이사로서 2005년 1월1일부터 인수시점인 2010년 10월1일까지 사업을 했고 2011년 12월22일자로 다시 ㈜현대씨에스엔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2010년 10월1일부터 2011년 12월 21일까지 김진오가 잠시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1.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베스트올의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베스트올의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 단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  |  |  |  |
| --- | --- | --- | --- |
| **지역** | **2013년 12월 31일** | **2014년 12월 31일** | **2015년 12월 31일** |
| **전체** | **가맹점** | **직영점** | **전체** | **가맹점** | **직영점** | **전체** | **가맹점** | **직영점** |
| **전체** | 147 | 147 | 0 | 142 | 142 | 0 | 136  | 136  | 0  |
| **서울** | 50 | 50 | 0 | 47 | 47 | 0 | 37  | 37  | 0  |
| **인천** | 7 | 7 | 0 | 7 | 7 | 0 | 7  | 7  | 0  |
| **부산**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대구**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광주**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대전** | 2 | 2 | 0 | 2 | 2 | 0 | 1  | 1  | 0  |
| **울산**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경기** | 64 | 64 | 0 | 61 | 61 | 0 | 74  | 74  | 0  |
| **강원**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충북** | 0 | 0 | 0 | 1 | 1 | 0 | 1  | 1  | 0  |
| **충남** | 4 | 4 | 0 | 4 | 4 | 0 | 4  | 4  | 0  |
| **전북** | 19 | 19 | 0 | 19 | 19 | 0 | 12  | 12  | 0  |
| **전남** | 1 | 1 | 0 | 1 | 1 | 0 | 0  | 0  | 0  |
| **경북**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경남**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제주**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세종**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베스트올의 가맹점수 변동 현황**

베스트올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신규개점∙계약종료∙계약 해지∙명의변경한 가맹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시점** | **연초** | **신규개점**  | **계약종료** | **계약해지** | **명의변경** | **연말** |
| **2013** | 136 | 25 | 0 | 14 | 5 | 147 |
| **2014** | 147 | 19 | 0 | 24 | 6 | 142 |
| **2015** | 142 | 34 | 0 | 40 | 20 | 136 |

1. **베스트올 외에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가맹사업현황**

베스트올 가맹사업 외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가맹사업은 없습니다.

1.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 기준**

베스트올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바로 전 사업연도에 연간평균으로 올린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  |
| --- | --- | --- | --- |
| **지역** | **2015년 말 가맹점수** | **2015년 매출액(단위: 원,VAT포함)** | **산출****가맹점수** |
| **연 평균** | **연환산 상한** | **연환산 하한** |
| **전체** | 136 | 361,109,285 | 875,100,066 | 48,746,801 | 88 |
| **서울** | 37 | 381,426,447 | 724,769,167 | 48,746,801 | 25 |
| **인천** | 7 | 281,236,471 | 755,661,590 | 63,486,264 | 6 |
| **부산** | 0 | 해당없음(5곳 미만) | 0 |
| **대구** | 0 | 해당없음(5곳 미만) | 0 |
| **광주** | 0 | 해당없음(5곳 미만) | 0 |
| **대전** | 1 | 해당없음(5곳 미만) | 0 |
| **울산** | 0 | 해당없음(5곳 미만) | 0 |
| **경기** | 74 | 371,346,831 | 875,100,066 | 55,689,150 | 54 |
| **강원** | 0 | 해당없음(5곳 미만) | 0 |
| **충북** | 1 | 해당없음(5곳 미만) | 1 |
| **충남** | 4 | 해당없음(5곳 미만) | 2 |
| **전북** | 12 | 산출가능한 가맹점 데이터가 없음 | 0 |
| **전남** | 0 | 해당없음(5곳 미만) | 0 |
| **경북** | 0 | 해당없음(5곳 미만) | 0 |
| **경남** | 0 | 해당없음(5곳 미만) | 0 |
| **제주** | 0 | 해당없음(5곳 미만) | 0 |
| **세종** | 0 | 해당없음(5곳 미만) | 0 |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각 가맹점의POS를 기초로 하여 연평균 매출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본사의 POS시스템을 사용 하지 않아 매출액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가맹점 40곳과 과 2015년 영업 개월 수가 3개월 미만인 8곳의 가맹점은 연평균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기 매출액은 총 136개 점포 중 실제 88개 점포의 연평균매출액의 현황입니다.

\*전북지역 가맹점들은 당사의 POS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 지역별 연평균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 별로 지역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1. **가맹지역본부(지사를 포함한다) 현황**

베스트올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지역본부는 없습니다.

1. **바로 전 사업연도의 광고∙판촉 지출 내역**

정보공개일 바로 전 사업연도의 당사의 연간 광고 및 판촉비로 사용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 --- | --- |
| **수 단** | **내 용** | **기간 및 일자** | **지출금액(단위:원)** |
| 광고 | 광고선전비 | 2015.1.1~2015.12.31 | 6,634,400 |
| **합계** | 6,634,400 |

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기관의 상호, 예치업무 담당 부서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 --- | --- |
| **예치기관명**  | **담당 부서** | **주소** | **전화번호** |
| 기업은행 | 기업상품팀 | 서울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 2가) | 02)729-7113 |
| 우리은행 | U-뱅킹업무부 |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 1가) | 1588-5000내선3번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
| --- |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3.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6.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도 외에도 ㈜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 |
| **항목** | **내용** | **비고** |
| 보험상품명 | 프랜차이즈보증보험 |  |
| 보험인(보험회사) | ㈜서울보증보험 |  |
| 보험계약자 | ㈜현대씨에스엔 |  |
| 피보험인(보험금수령인) | 가맹점사업자 |  |
| 보험범위 | 예치금액 |  |
| 보험기간 | 가맹금 예치기관(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개시일까지) |  |
| 보장범위 |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  |
| 지급조건 |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의무 불이행 |  |
| 보험금 수령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청구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여부결정 → 보험금 지급 |  |

|  |
| --- |
| **Ⅲ.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1.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1. **형(刑)의 선고**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 니다.**

|  |
| --- |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베스트올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금액 부담이 필요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최초 가맹금
	1. 귀하(양수인 포함)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 | --- | --- | --- |
| **구분** | **내역** | **금액(단위:원, VAT 포함)**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 가맹비 | 1. 최초 가맹계약 당시 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가입하는 대가
2. 최초 가맹점 오픈을 위한 교육 및 정보∙자료 제공의 대가
3. 가맹점 개점을 위한 인력지원의 대가
 | \2,200,000 |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이행이 착수된 채무를 제외하고 반환 |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1. 귀하(기존 가맹점 양수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 | --- | --- | --- |
| **구분** | **내역** | **금액(단위:원/ 부가세포함)**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 양수 가맹비 | 1. 양수 가맹점 운영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및 인력지원의 대가
2. 양수전 교육비
 | \1,100,000 | 가맹점 영업시작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1. 보증금

귀하(가맹점 양수자 포함)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금은 없습니다.

1. 예치 가맹금의 범위

귀하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증권을 제공하는 경우에 다음 내역을 포함하여 증권을 교부합니다.

|  |  |
| --- | --- |
| **구 분** | **금액(단위:원, VAT포함)** |
| **신규 가입자** | **기존 가맹점 양수자** |
| **합 계** | **2,200,000** | **1,100,000** |
| 가맹비 | 2,200,000 | 1,100,000 |

1. 최초 가맹금 이외에 가맹사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다른 비용의 추정치

귀하(신규가입자)가 그 밖에 베스트올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66㎡ 기준 약 78,100,000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타 편의점 운영자는 기존 인테리어 및 설비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66㎡기준/단위:원/VAT포함)

|  |  |  |  |  |
| --- | --- | --- | --- | --- |
| **품목** | **지급대상** | **금액** | **지급기한** | **반환조건/****반환될 수 없는 사유** |
| 인테리어 (3.3M2당 1,100,00) | 정보공개서 Ⅴ-1의 거래상대방 | 22,000,000 | 계약 시 개별계약 | 소요비용 제외 후 반환 |
| 전면 간판 | 4,400,000(5m기준) |
| 기타설비 | 29,700,000 |
| 초도물품 | 22,000,000(담배포함) |
| **합 계** | **78,100,000** |
| 인테리어 직접 시공 시 전체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에 검수비로 제공(공사비는 별도임) |

1.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66m2기준)으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2. 상기 비용은 설비의 품질, 선택사항에 대한 추가 및 점포 건물에 따른 냉/난방기, 철거, 가스설비, 전기승압, 통신설비, 소방시설공사, 화장실공사, 외부 상하수도공사, 어닝, 외장공사,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자세한 비용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제공안내하고 있습니다.
4. 가맹점 입지 선정의 주체 및 선정기준

베스트올 가맹점 입지선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입지선정의 주체** | **입지 선정의 기준** |
| 가맹희망자 | 1)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

1.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 |
| **구분** | **교육 기준** | **계약ㆍ채용 기준** |
| 가맹점사업자 | 특별한 기준 없음 |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만20세 이상일 것 |
| 종업원 | 특별한 기준 없음 | 만18세 이상일 것 |

1.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ㆍ공급업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내역 및 공급방법ㆍ공급업체에

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 | --- | --- | --- |
| **구분** | **품목** | **내 역** | **공급방법** | **공급업체** |
| **최초****개설****품목** | 인테리어 설비 | 각 점포 상황에 따라 다름 | 검수비 제공 후 가맹점사업자 직접 시공, 또는 당사 주선 | 스페이스공감 |
| 간판  | 전면간판 | 당사 주선 | (주)리더스에스아이 |
| 기타 설비 | 별첨3참조 | 가맹본부 |
| 초도 물품 |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초도물품 내역 | 직접구입 또는 주선 | ㈜우린 |
| 개점 이후필요 품목 | 상온물류 | 잡화/상온제품/과자/라면/음료 | 직접구입 또는 주선 | ㈜우린 |
| 일일식품 | 냉동/냉장식품 | 직접구입 또는 주선 | ㈜우린 |
| 주류 | 맥주/소주/양주/막걸리 | 직접구입 또는 주선 | 수시 변동 |
| 담배 | 국산담배/양담배 | 직접구입 또는 주선 | 수시 변동 |

1. 금전지급방법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인의 경우에는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구분** | **기준 금액(단위:원/VAT포함)** | **지급시기** |
| 예치 가맹금(계약금) | 신규 가입자 | 기존 가맹점 양수자 | 계약 체결 시 |
| 2,200,000 | 1,100,000(일시불) |
| 중도금 | 기타 대금의 70% | 인테리어 시작 전 |
| 잔금 | 기타 대금의 30% | 초도 입고 3일전 |

 \*금전 지급 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 **영업 중의 부담**
2.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오픈 이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내 역** | **지급****대상자** | **금액(단위: 원, VAT포함) 또는 산정기준** | **지급****기한** | **반환여부 및 반환조건** |
| 전산관리비 | POS 시스템 사용료 | ㈜현대씨에스엔 | 110,000 | 매월 | 소멸성 비용 |
| 점포환경개선비용 | 간판교체,인테리어(장비,집기의 교체비용 제외한 실내 건축공사) | 스페이스공감,㈜리더스에이아이 등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가맹본부 분담비용20%를 제외한 나머지 | 개별 청구 | Ⅶ-1 참조 |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가맹본부 분담비용 40%를 제외한 나머지 |
| 지연이자 | 금전지급의무의 지급기한 경과시지연이자  | 가맹본부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지급하는 날까지 연20% | 금전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회계처리∙재고관리 감독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 POS, ERP시스템, 회계장부(이하 ‘회계자료’라 한다)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지정한 POS시스템설치하고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자료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전산 매출정보수집,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1. **계약 종료 후의 부담**
2. 계약연장이나 재계약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1.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2.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와 가맹계약체결 의사가 없을 경우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계약을 종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1.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가맹점사업자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1.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베스트올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당사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한 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가맹점사업자의 경우 정보공개서상의 양수가맹비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그 밖의 부담 비용

귀하가 그 밖의 추가 부담 비용은 없습니다.

1.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베스트올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로부터 부여 받았던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 당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베스트올 가맹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사용을 중지 하여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  |
| --- |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귀하가 베스트올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 --- | --- |
| **품목** | **내역** | **요구/권유** | **거래상대방** |
| 인테리어 설비 | 실내 인테리어 | 권유 | 스페이스공감 |
|  간판 | 전면 간판 | 권유 | (주)리더스에스아이 |
| 기타 설비 | 별첨3 참조 |
| 상온물류 | 잡화/상온제품/과자/라면/음료 등 | 권유 | ㈜우린 |
| 일일식품 | 냉동/냉장식품 등 | 권유 | ㈜우린 |
| 주류 | 맥주/소주/양주/막걸리 등 | 권유 | 수시변동 |
| 담배 | 국산담배/양담배 등 | 권유 | 수시변동 |

\*개점 이후에도 추가품목 구입시 요구/권유 기준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ㆍ용역 외에 거래상대방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당사는 베스트올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고 그에 대한 알선의 대가를 수수하지 않습니다.

1.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베스트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당사로부터 승인된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고객에게 제공∙판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승인되지 않은 상품ㆍ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정한 상품ㆍ용역 이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경쟁업체의 출현, 시장변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기존 상품ㆍ용역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가맹본부가 지정한 상품ㆍ용역을 판매해야 합니다.

1.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고객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1. **영업지역**
2.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동일한 업종 범위** |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
| 가맹본부 | 계열회사 |
| 편의점 | 베스트올 | 해당없음 |

1.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  |
| --- | --- |
| **설정기준** | **설정방법** |
| 가맹점소재지로부터 반경 50m 범위 | 별지에 영업지역을 지도로 표시 |

1.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  |
| --- | --- |
|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 **재조정 절차** |
|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만료전 180~90일 사이에 변경된조건에 대한 통지 |

1.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1.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 **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1. 가맹계약기간

베스트올의 가맹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갱신시에도 동일한 기간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 1.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최대 10년의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순 서** | **기간(계약만료일: D-day)** |
| * + - 1.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 D-180 ~ D-90 |
| * + - 1. 다.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 D-180 ~ D-90 |
| * + - 1.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 D-180 ~ D-90 |
| * + -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 +15일 이내 |
| * + - 1.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
| * + - 1.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  |
| * + - 1.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 D-180 ~ D-90 |
| * + - 1.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 D-60일 이전 |
|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 D-day |
|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 1. 계약 갱신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  |  |
| --- | --- |
| **갱신요구 거절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가맹점사업자가 정보공개서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갱신비를 지급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7조 2항 각호 |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ㆍ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ㆍ면허ㆍ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ㆍ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 1.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계약 해지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3조2항 및 3항 | 25조 각호 및 31조 1항 1호 |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 4조3항 |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 4조4항 |
| 가맹점사업자가 제15조 및 기타 대금의 약정한 납입기일을 경과하는 경우 | 15조 |
| 가맹점사업자가 개점이 후 교육에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 16조 |
|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 의무 위한 경우 | 17조 1항 및 2항 |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로 하여금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18조 |
|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20조 1항 |
| 가맹점사업자가 제품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필수품목을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거래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지정거래처품목을 사용하지 않는 행위 등으로 인해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 21조1항~4항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 21조 5항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 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 22조 9항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 받지 않고서 지정거래처품목을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 23조 |
|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 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26조 |
| 가맹점사업자가 노후화 또는 위생·안전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시설 등의 교체·설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 27조 2항  |
| 가맹점사업자가 회계자료 통지 등의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 28조 |
|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 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 29조 |
|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판촉활동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 30조 2항 ,5항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판촉물 등을 제작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 30조 7항 |
|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 35조 1항 |
|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 및 별도 약정한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 25조 20호 |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최초 개설 비용의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 31조 1항 2호 |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계약 해지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당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당사의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31조 4항 각호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①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②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ᆞ과태료 등의 부과 처분③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 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가맹점사업자가 약정해지 사유 위반으로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가맹계약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된다.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계약 해지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31조 3항 각호 |
|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  |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계약 해지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한 영업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 31조 2항 각호 |
|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
| 당사가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

그밖에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상호협의 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변경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 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2.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및 상속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양도 가능 조건** | **양도 절차**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이수 및 정보공개서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정보공개서상의 양수가맹비 등)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직계존비속의 영업 상속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영업개시 전까지 교육비를 부담하고 교육을 이수하고 본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운영권의 대행, 위탁 등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권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경우 반드시 당사에 사전 통보하고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행 및 위탁자는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 하여야 합니다.

1. **경업금지, 영업시간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2. 경업금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포함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인접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자신 및 제3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 없이 베스트올과 동종업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 하여서는 안됩니다.

계약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베스트올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금지되는 경업금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경업금지 되는 업종** |
| 편의점 |

1.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베스트올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영업시간** | **영업일수** |
| 24시간 | 연중무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1. 권장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  |  |
| --- | --- |
| **권장 종업원 수**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
|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

1.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  |  |  |  |
| --- | --- | --- | --- |
| **관리ㆍ감독 항목** | **감독 절차** | **빈도 및 시기** | **비고** |
| 매장 청결 |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수시 |  |
| 제품의 표준화 | 담당자 매장 방문 → 매뉴얼 준수 및 사입 체크→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완료 | 수시 |  |
| POS사용 | 담당자 매장 방문 → POS사용 상태점검→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수시 |  |

1.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2.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광고(브랜드광고, 제품광고 등을 포함하며 가맹점 모집광고는 제외 됨)를 총괄하며 당사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 --- | --- |
| **구분** | **광고 성격** | **부담비율** | **분담절차** |
| **본사부담** | **가맹점부담** |
| 공동광고 | 브랜드광고 | 광고비의 50% | 광고비의50%/가맹점사업자수 | 광고 계획 공고 및 통보→ 가맹점부담액 통지(광고1개월 전)→ 통지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 납입 |
| 상품광고 |
| 가맹점모집광고 | 100% | - | - |
| 공동판촉 | 행사에 따라 달라짐 | 기획비용부담 | 제작비용부담 | 행사 계획 공고→ 가맹점 부담액 제시→ 행사에 따른 분담금 납입 |
| 기획, 제작 비용 이외는 협의 |

\*공동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매출활성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

하여야 합니다.

1.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가 제공한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이나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그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관리감독상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한 후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당사와 귀하는 가맹계약의 양 당사자로서, 당사는 귀하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의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위약벌 등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귀하는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17조(비밀유지 의무), 제18조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금오천만원(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가맹계약서제33조 제1항 |
| 귀하는 지정거래처품목에 대하여 당사 또는 협력업체를 통해 구입하여 사용하지 않고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별도의 거래처를 통하여 지정거래처 품목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금이천만원 (\20,000,000)을 지급하여야 하며, 시정 전까지 적발 익일부터 위약금으로 하루 당 금일십만원(\200,000)씩 당사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 제33조 제2항 |
| 귀하가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지정사양(제조원/판매원 등)의 필수품목 이외에 품목을 구입/사용하거나 지정된 제품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경우 적발 즉시 위약벌로 금이백만원(\2,000,000)을 지급하여야 하며, 시정 전까지 적발 익일부터 위약금으로 하루 당 금이십만원(\200,000)씩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33조 제3항 |
| 귀하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당사가 계약 기간 내에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 등을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귀하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위약벌로 1일 금삼십만원(300,000원)씩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33조 제4항 |
|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3조 제5항 |
| 본 계약에 규정된 금전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 제37조 제1항 |

|  |
| --- |
|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가맹점 오픈 절차**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30일 정도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 --- | --- |
| **구 분** | **내 용** | **소요기간** | **소요비용**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070-4287-7001). 방문- 인터넷 홈페이지 | 약1일 | - |
| 1차 상담 | - 전화상담- 본사방문상담 | 약1일 | - |
| 정보공개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 정보공개 사항 검토 | 정보공개서 및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14(7)일 이후 가맹계약 가능 | - |
|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 - 계약체결의사를 밝힌 가맹희망자에 한하여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 가맹계약 체결 전 제공 | - |
| 점포 계약 | - 점포입지 선정- 점포개발 착수- 상권분석 | 약 10일 | 개별부담 |
| 점포실측/설계 |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  |
|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가맹금예치 | - 가맹 계약 체결- 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 - | 가맹비 전액 예치기타 대금의 10% |
| 도면 작성 | - 인테리어 / 별도 / 추가공사 도면협의 | 약 7일 | 공사완료 시 기타 대금 잔액 완불 |
| 인테리어 공사 | - 인테리어 공사 실시 |
| 기타 물품 설치 | - 기타 물품 설치 및 초도물품 입고 |
| 교육 | - 교육- 아르바이트교육, 점주교육- 개점 전후 진행 | 개점 전후 3일 | 가맹비에 포함 |
| 오픈 | - 오픈 리허설(담당운영과장 판단 후 오픈결정)- 오프닝 행사(담당운영과장 판단) | - |  |

\* 상기일정은 개별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1. **분쟁해결 절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맹거래사 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은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가맹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상호합의 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
| --- |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점포환경개선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당사의 점포환경 개선 요구가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점포환경개선** **사유** | **가맹본부 부담****비용항목** | **가맹본부 부담****비용비율** | **지급절차** | **비용부담****제외사유** | **비고** |
| ㅇ 점포의 시설, 장비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ㅇ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ㅇ 간판교체 비용ㅇ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ㅇ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ㅇ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ㅇ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

1.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의 개설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판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

니다.

1.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 | --- | --- | --- |
| **구분** | **대상 및 내용** | **절 차** | **비용부담** | **비고** |
| 가맹본부 | 계약이행, 표준화,가맹점 별시장조사·판촉, 가맹점의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 가맹본부가 개별 가맹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시 가맹점 방문 → 가맹점 현황 분석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후 그 결과 및 개선방안 서면 제시 | 가맹본부 부담 | 필요시 |
| 가맹점사업자 | 계약이행, 표준화,가맹점 별시장조사·판촉, 가맹점의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 가맹점사업자 특별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후 그 결과 및 개선방안 서면 제시 | 가맹점사업자부담 | 요청시 |

1.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
| --- |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베스트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교육ㆍ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 --- | --- |
| **교육과정** | **교육내용** | **소요시간** | **담당자** |
| 직영점 | 가맹점 운영에 관한 전반 | 2일 | 직영점 점장 |
| 가맹점 | Pos 사용법 | 1일 | Pos 업체 |

\*개점 전 교육훈련 종료 시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귀하에게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교육훈련의 최소 이수해야 할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훈련에 미 참여 및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오픈 연기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구분** | **최소시간** | **비용(단위: 천원)** | **비고** |
| 개점 전 교육 | 3일 | 가맹비에 포함 | 최초 계약시 이수 |

1.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와 사전협의 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끝**

**별첨1. 재무상태표**

**2013년, 2014년**

|  |  |
| --- | --- |
|  | **재 무 상 태 표** |
|  | 제 5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제 4기 2013년 12월 31일 현재 |
|  |
|  |
|  |  |  |  |  |
| 회사명 : (주)현대씨에스엔 |  |  | (단위 : 원) |
|  |  |  |  |  |
| **과 목** | **제 5(당)기** | **제 4(전)기** |
| **금 액** | **금 액** |
|  **자 산** |  |  |  |  |
|  **Ⅰ. 유 동 자 산** |  | **3,439,702,849** |  | **3,504,332,555** |
|  **(1) 당 좌 자 산** |  | **1,906,200,539** |  | **2,541,605,805** |
|  현 금 | 　 | 21,605,409 | 　 | 25,837,895 |
|  보 통 예 금 | 　 | 379,982,405 | 　 | 466,069,283 |
|  외 상 매 출 금 | 1,305,693,751 | 　 | 1,729,382,908 | 　 |
|  대 손 충 당 금 | 13,056,938 | 1,292,636,813 | 17,293,829 | 1,712,089,079 |
|  미 수 금 | 116,183,368 | 　 | 145,348,418 | 　 |
|  대 손 충 당 금 | 772,094 | 115,411,274 | 1,453,484 | 143,894,934 |
|  선 급 금 | 　 | 87,198,639 | 　 | 183,985,081 |
|  선 급 비 용 | 　 | 9,365,999 | 　 | 9,729,533 |
|  **(2) 재 고 자 산** |  | **1,533,502,310** |  | **962,726,750** |
|  상 품 | 　 | 1,497,559,304 | 　 | 918,673,512 |
|  상 품 ( 프 랜 차 이 즈) | 　 | 9,325,181 | 　 | 19,153,238 |
|  문 화 상 품 권 | 　 | 26,351,325 | 　 | 24,570,000 |
|  전 화 카 드 | 　 | 266,500 | 　 | 330,000 |
|  **Ⅱ. 비 유 동 자 산** |  | **780,723,758** |  | **637,205,546** |
|  **(1) 투 자 자 산** |  | **432,741,135** |  | **249,887,083** |
|  장 기 성 예 금 | 　 | 134,622,331 | 　 | 100,093,553 |
|  퇴 직 연 금 운 용 자 산 | 　 | 298,118,804 | 　 | 149,793,530 |
|  **(2) 유 형 자 산** |  | **100,880,382** |  | **144,181,443** |
|  구 축 물 | 14,875,000 | 　 | 14,875,000 | 　 |
|  감 가 상 각 누 계 액 | 14,874,000 | 1,000 | 14,874,000 | 1,000 |
|  기 계 장 치 | 41,070,000 | 　 | 41,070,000 | 　 |
|  감 가 상 각 누 계 액 | 41,069,000 | 1,000 | 41,069,000 | 1,000 |
|  차 량 운 반 구 | 230,365,557 | 　 | 228,289,407 | 　 |
|  감 가 상 각 누 계 액 | 197,300,467 | 33,065,090 | 187,880,521 | 40,408,886 |
|  비 품 | 297,630,813 | 　 | 281,201,023 | 　 |
|  감 가 상 각 누 계 액 | 238,643,301 | 58,987,512 | 194,182,837 | 87,018,186 |
|  시 설 장 치 | 156,018,519 | 　 | 156,018,519 | 　 |
|  감 가 상 각 누 계 액 | 147,192,739 | 8,825,780 | 139,266,148 | 16,752,371 |
|  **(3) 무 형 자 산** |  | **19,282,341** |  | **29,138,120** |
|  소 프 트 웨 어 | 　 | 19,282,341 | 　 | 29,138,120 |
|  **(4) 기 타 비 유 동 자 산** |  | **227,819,900** |  | **213,998,900** |
|  임 차 보 증 금 | 　 | 72,000,000 | 　 | 72,000,000 |
|  기 타 보 증 금 | 　 | 155,819,900 | 　 | 141,998,900 |
|  **자 산 총 계** |  | **4,220,426,607** |  | **4,141,538,101** |
|  **부 채** |  |  |  |  |
|  **Ⅰ. 유 동 부 채** |  | **2,377,798,470** |  | **2,286,518,905** |
|  외 상 매 입 금 | 　 | 827,136,789 | 　 | 608,400,900 |

|  |  |
| --- | --- |
|  | **재 무 상 태 표** |
|  |  |  |  |  |
|  | 제 5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제 4기 2013년 12월 31일 현재 |  |
|  |  |
|  |  |
|  |  |  |  |  |
| 회사명 : (주)현대씨에스엔 |  |  |  | (단위 : 원) |
|  |  |  |  |  |
| **과 목** | **제 5(당)기** | **제 4(전)기** |
| **금 액** | **금 액** |
|  미 지 급 금 | 　 | 304,484,708 | 　 | 938,855,802 |
|  예 수 금 | 　 | 15,625,930 | 　 | 16,881,510 |
|  가 수 금 | 　 | 588,211,000 | 　 | 154,000,000 |
|  선 수 금 | 　 | 44,725,216 | 　 | 28,497,280 |
|  단 기 차 입 금 | 　 | 550,000,000 | 　 | 506,635,098 |
|  미 지 급 세 금 | 　 | 29,374,252 | 　 | 33,248,315 |
|  미 지 급 비 용 | 　 | 18,240,575 | 　 | 0 |
|  **Ⅱ. 비 유 동 부 채** |  | **0** |  | **0** |
|  **부 채 총 계** |  | **2,377,798,470** |  | **2,286,518,905** |
|  **자 본** |  |  |  |  |
|  **Ⅰ. 자 본 금** |  | **50,000,000** |  | **50,000,000** |
|  자 본 금 | 　 | 50,000,000 | 　 | 50,000,000 |
|  **Ⅱ. 자 본 잉 여 금** |  | **0** |  | **0** |
|  **Ⅲ. 자 본 조 정** |  | **0** |  | **0** |
|  **Ⅳ. 기 타 포 괄 손 익누계액** |  | **0** |  | **0** |
|  **Ⅴ. 이 익 잉 여 금** |  | **1,792,628,137** |  | **1,805,019,196** |
|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  | **1,792,628,137** |  | **1,805,019,196** |
|  **( 당 기 순 손 실 )** |  |  |  |  |
|  당기 : 12,391,059 원 | 　 | 　 | 　 | 　 |
|  전기 : -457,517,511 원 | 　 | 　 | 　 | 　 |
|  **자 본 총 계** |  | **1,842,628,137** |  | **1,855,019,196**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 **4,220,426,607** |  | **4,141,538,101** |

**2015년**





**별첨2. 손익계산서**

**2013년, 2014년**

|  |  |  |
| --- | --- | --- |
|  | **손 익 계 산 서** |  |
|  |  |  |  |  |
|  | 제 5(당)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제 4(전)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
|  |
|  |  |  |  |  |
| 회사명 : (주)현대씨에스엔 |  | (단위 : 원) |
|  |  |  |  |  |
| **과 목** | **제 5 (당)기** | **제 4 (전)기** |
| **금 액** | **금 액** |
|  **Ⅰ. 매 출 액** |  | **30,793,762,947** |  | **34,660,417,499** |
|  상 품 매 출 | 28,090,830,935 |  | 31,127,474,805 |  |
|  물 류 수 수 료 | 544,894,842 |  | 553,318,433 |  |
|  수 입 수 수 료 | 209,286,461 |  | 190,028,279 |  |
|  가 맹 금 수 수 료 | 28,290,909 |  | 47,618,182 |  |
|  매 출 ( 프 랜 차 이 즈 ) | 206,590,000 |  | 466,320,000 |  |
|  문 화 상 품 권 매 출 | 1,708,032,800 |  | 2,268,364,800 |  |
|  전 화 카 드 매 출 | 5,837,000 |  | 7,293,000 |  |
|  **Ⅱ. 매 출 원 가** |  | **27,187,284,170** |  | **30,438,404,041** |
|  **상 품 매 출 원 가** |  | **27,187,284,170** |  | **30,438,404,041** |
|  기 초 상 품 재 고 액 | 918,673,512 |  | 94,086,941 |  |
|  당 기 상 품 매 입 액 | 27,783,877,620 |  | 31,302,768,899 |  |
|  타 계 정 으 로 대 체 액 | 17,707,658 |  | 39,778,287 |  |
|  기 말 상 품 재 고 액 | 1,497,559,304 |  | 918,673,512 |  |
|  **Ⅲ. 매 출 총 이 익** |  | **3,606,478,777** |  | **4,222,013,458** |
|  **Ⅳ. 판 매 비 와 관 리 비** |  | **4,634,580,211** |  | **4,685,525,110** |
|  임 원 급 여 | 119,000,000 |  | 120,000,000 |  |
|  직 원 급 여 | 1,336,785,434 |  | 1,168,989,626 |  |
|  상 여 금 | 20,700,000 |  | 218,102,759 |  |
|  잡 급 | 27,167,647 |  | 1,936,665 |  |
|  퇴 직 급 여 | 13,010,886 |  | 18,790,801 |  |
|  복 리 후 생 비 | 124,417,923 |  | 114,879,512 |  |
|  여 비 교 통 비 | 4,925,140 |  | 51,600 |  |
|  접 대 비 | 25,209,600 |  | 61,752,600 |  |
|  통 신 비 | 18,054,847 |  | 18,881,337 |  |
|  수 도 광 열 비 | 3,543,520 |  | 1,423,951 |  |
|  전 력 비 | 11,962,106 |  | 9,636,940 |  |
|  세 금 과 공 과 금 | 60,650,780 |  | 62,735,500 |  |
|  감 가 상 각 비 | 74,587,851 |  | 101,664,448 |  |
|  지 급 임 차 료 | 236,940,000 |  | 215,400,000 |  |
|  수 선 비 | 1,485,500 |  | 6,237,000 |  |
|  보 험 료 | 68,827,943 |  | 79,038,826 |  |
|  차 량 유 지 비 | 182,981,354 |  | 129,620,687 |  |
|  운 반 비 | 1,043,489,804 |  | 1,073,825,172 |  |
|  교 육 훈 련 비 | 165,000 |  | 270,000 |  |

|  |
| --- |
| **손 익 계 산 서** |
|  |  |  |  |  |
|  | 제 5(당)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제 4(전)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
|  |
|  |  |  |  |  |
| 회사명 : (주)현대씨에스엔 |  | (단위 : 원) |
|  |  |  |  |  |
| **과 목** | **제 5 (당)기** | **제 4 (전)기** |
| **금 액** | **금 액** |
|  도 서 인 쇄 비 | 8,942,528 |  | 393,637 |  |
|  소 모 품 비 | 59,757,768 |  | 57,516,073 |  |
|  지 급 수 수 료 | 755,488,548 |  | 756,303,621 |  |
|  광 고 선 전 비 | 6,602,800 |  | 13,948,205 |  |
|  대 손 상 각 비 | 46,094,020 |  | 18,747,313 |  |
|  무 형 고 정 자 산 상 각 | 13,815,779 |  | 13,221,779 |  |
|  견 본 비 | 0 |  | 9,091 |  |
|  잡 비 | 1,343,470 |  | 135,162 |  |
|  판 매 장 려 금 | 297,015,129 |  | 365,355,701 |  |
|  리 스 료 | 71,614,834 |  | 56,657,104 |  |
|  **Ⅴ. 영 업 손 실** |  | **1,028,101,434** |  | **463,511,652** |
|  **Ⅵ. 영 업 외 수 익** |  | **1,059,974,093** |  | **1,133,225,221** |
|  이 자 수 익 | 7,534,677 |  | 2,930,347 |  |
|  대 손 충 당 금 환 입 | 0 |  | 18,916,140 |  |
|  유 형 자 산 처 분 이 익 | 3,635,363 |  | 0 |  |
|  판 매 장 려 금 | 968,678,450 |  | 1,011,179,002 |  |
|  잡 이 익 | 80,125,603 |  | 100,199,732 |  |
|  **Ⅶ. 영 업 외 비 용** |  | **44,263,718** |  | **139,315,728** |
|  이 자 비 용 | 18,240,575 |  | 0 |  |
|  법 인 세 추 납 액 | 12,454,720 |  | 106,469,010 |  |
|  재 고 자 산 폐기처분손실 | 9,017,468 |  | 32,582,451 |  |
|  전 기 오 류 수 정 손 실 | 3,576,161 |  | 0 |  |
|  잡 손 실 | 974,794 |  | 264,267 |  |
|  **Ⅷ. 법 인 세 차 감 전 손 실** |  | **12,391,059** |  | **-530,397,841** |
|  **Ⅸ. 법 인 세 등** |  | **0** |  | **72,880,330** |
|  법 인 세 등 | 0 |  | 72,880,330 |  |
|  **Ⅹ. 당 기 순 손 실** |  | **12,391,059** |  | **-457,517,511** |

**2015년**

****



**별첨3 기타 설비**

|  |  |  |
| --- | --- | --- |
| **설비명** | **요구/권유** | **거래상대방** |
| 워크인쿨러 | 권유 | 가맹본부 |
| 실외기 |
| 런치케이스 |
| 실외기 |
| 아크릴윙추가 |
| 냉난방기 |
| 냉동고 |
| 포스 |
| 서브컴퓨터(관리용) |
| 프로그램 |
| 온수기/온장고 |
| 냉동고 |
| 핸드폰충전기 |
| 전자레인지 |
| 쓰레기통 |
| 라면국물통 |
| 중앙진열대 |
| 벽면진열대 |
| 앤드진열대 |
| 선반추가 |
| 브라켓바 |
| 스토파 |
| 프라이스레일 |
| 우산진열대 |
| 껌매대 |
| 신문진열대 |
| 측면진열대 |
| 카운터진열대 |
| 카메라 |
| 카메라용PC |